

# 인사규정

##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채용원칙)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 
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 
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응시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, 신체조건, 용모, 학력, 연령  
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제24조제2항제2호다목 중 “정직·강등”을 “정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 
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강등: 9년

제39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3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 
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 
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 
사람

제39조제2항 중 “제1호”를 “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직위해제된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유지되나,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“공금의 횡령·유용은”을 “공금의 횡령·유용, 채용비리 관련자는 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신규임용방법) ①~⑤ (생략)</p> <p>⑥ 직원의 신규임용 시 필요한 인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충원계획 등 사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. <u>다만, 공단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수지상 적자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원이 있더라도 직원의 신규임용은 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신규임용방법) 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9조의2(채용원칙)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응시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, 신체조건, 용모, 학력,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</u></p>

제24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①  
(생략)

②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
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 
수 없다.

1. (생략)
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 
날로부터 제1항제2호의 기간  
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 
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  
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 
다음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 
그 승급제한 기간은 이를 승  
급기간에 산입한다.

가~나. (생략)

다. 정직·강등: 7년

<신설>

제39조(직위해제) ① 이사장은 다  
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직원  
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 
아니할 수 있다.

1~3. (생략)

제24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가~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정직: ---

라. 강등: 9년

제39조(직위해제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~3. (현행과 같음)

4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이사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4. ----- .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.

5. 금품비위, 성범죄,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

② -----제1호 및 제2호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직위해제된 사람은 직원의 신분은 유지되나,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.

제47조의2(징계시효) ① 징계의결  
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 
발생한 날부터 3년(금품 및  
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 
은 5년)이 지나면 하지 못한  
다.

②~③ (생략)

제47조의2(징계시효) ① -----  
-----  
----- (-----  
-----, 공금의 횡령·유용,  
채용비리 관련자는 --)-----  
-----.

②~③ (현행과 같음)